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전·후 비교표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작성기준일: 2021년 9월 30일	작성기준일: 2022년 9월 30일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1. 9. 30 기준 투자비용 : 동종유형총보수(2021. 9. 30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 2021. 9. 30 기준 운용전문인력 : 2021. 9. 30 기준	작성기준일: 2022. 9. 30 기준 투자비용 : 동종유형총보수(2022. 9. 30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 2022. 9. 30 기준 운용전문인력 : 2022. 9. 30 기준
제 2 부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2021.10.13 <u>-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u> <u>-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 : 2021. 9. 30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4.37%로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2021.10.13 <u>-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수익자총회 관련 사항 일부 변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 : 2022. 9. 30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2.39%로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

	<p>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위험등급은 라자드코리아 자산운용(주)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므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동종유형총보수:2021.09.30 기준</p> <p>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직전 회계연도 : 2020.10.01 ~ 2021.09.30]</p>	<p>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위험등급은 라자드코리아 자산운용(주)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므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동종유형총보수:2022.09.30 기준</p> <p>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직전 회계연도 : 2021.10.01 ~ 2022.09.30]</p>
<p>제 3 부. 집합 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 : 2021.09.30 기준</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2021.09.30 기준</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가~나. 2021.09.30 기준</p> <p>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21.09.30 기준</p>	<p>1. 재무정보 : 2022.09.30 기준</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2021.09.30 기준</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가~나. 2022.09.30 기준</p> <p>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22.09.30 기준</p>
<p>제 4 부. 집합 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p> <p>라. 운용자산규모 : 2021. 09.30 기준</p>	<p>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p> <p>라. 운용자산규모 : 2022. 09.30 기준</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① 수익자총회의 소집</p> <p>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① 수익자총회의 소집</p> <p>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p>

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

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p>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첫 문장)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2 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 분의 1 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4) 반대매수청구권</p> <p>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p>	<p>(4) 반대매수청구권</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가.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p>

	<p>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p>	<p>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나.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의무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의무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